

의안번호	2214646
의 퇴 인	임호선의원
회 답 일	2026.2.10.
추계번호	25D6467

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라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설치 등을 실시하는 경우, 추가 재정소요는 2028년 14억 1,500만원, 2032년 16억 3,0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75억 8,000만원(연평균 15억 1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평균
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설치 등(안 제13조 등)	1,415	1,465	1,510	1,560	1,630	7,580	1,516

주: 본 추계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을 5개 시·도에 설치하고 전문인력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인건비,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조(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설치 등)부터 안 제15조(인권침해 예방교육) 까지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할 수 있고, 이를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	재량규정
		주취자 공공구호기관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포함한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함	의무규정
		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주취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16조(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등)	시·도지사는 주취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의료지원의 지역별 거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3조(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설치 등)부터 안 제15조(인권침해 예방교육) 까지	○	-
2	안 제16조(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등)	-	· 기 실시중 2026년 현재 12개 시·도 24개 소의 주취자 보호 관련 센터가 운영 중(경찰청 자료)이고 5개 시·도에 추가 지정되더라도 기존 인력 재배치 등으로 수행 가능 예상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관련 비용으로 한정
 - 경찰청에 따르면 12개 시·도에서 24개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등을 운영 중이므로 안 제16조의 주취자 응급의료기관 지정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
- 본 추계에서는 안 제13조 등에서 규정한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을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5개 시·도(대전, 광주, 울산, 세종, 경남)에서 운영하고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가정
 - 본 추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유사사례로 보아 제정안에서 규정한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운영, 종사자 배치,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
 -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, 학대피해 노인 일시보호,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
-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부칙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제정안에 따라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을 지정·운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인건비, 사업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
 - 유사사례인 보건복지부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, 지역 기관에 인건비와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음
- 본 추계는 5개 시·도에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을 지정하고 4명씩 종사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종사자 수, 1인당 인건비, 1개소 당 사업비를 곱하여 산출
 - (인건비) 제정안에 따라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에 총 20명의 종사자를 배치하는 경우 2028년 10억 200만원, 2032년 12억원으로 추정
 - (인원) 5개의 주취자 공공구호기관마다 종사자 4명을 배치하므로 총 20명이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
 - (1인당 인건비) 봉급과 기관부담금, 퇴직적립금으로 구성되고, 2026년 기준 봉급 3,900만원¹⁾에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며, 추정된 봉급에 연도별 기관부담금 요율²⁾, 퇴직적립률(8.333%)를 곱하여 산출

[표 2]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종사자 인건비 추정: 2028~2032년

(단위: 명, 백만원)

구분		2028	2029	2030	2031	2032
인원(a)		20	20	20	20	20
1인당 인건비 (b)	봉급	42	44	45	47	49
	기관부담금	5	5	6	6	7
	퇴직적립금	4	4	4	4	4
	소 계	51	53	55	57	59
인건비(=a×b)		1,020	1,060	1,100	1,140	1,2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1)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에서 지역 기관에 지원하는 인건비를 참고하여 추정

2)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값으로 공공기관 기준이며 2028년 12.064%, 2029년 12.406%, 2030년 12.750%, 2031년 13.096%, 2032년 13.429%

- (사업비) 제정안에 따라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, 2028년 3억 9,500만원, 2032년 4억 3,000만원으로 추정
 -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사업비는 2026년 기준 1개소 당 7,600만원³⁾이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

[표 3]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사업비 추정: 2028~2032년

(단위: 명, 백만원)

구분	2028	2029	2030	2031	2032
주취자 공공구호기관 수(a)	5	5	5	5	5
1개소 당 사업비(b)	79	81	82	84	86
사업비(=a×b)	395	405	410	420	43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추계결과,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지정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14억 1,500만원, 2032년 16억 3,0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75억 8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설치사업비 추정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
인건비	1,020	1,060	1,100	1,140	1,200	5,520
사업비	395	405	410	420	430	2,060
합 계	1,415	1,465	1,510	1,560	1,630	7,58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을 5개 시·도에 설치하고 전문인력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인건비,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3)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에서 지역 기관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참고하여 추정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